

#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 취약지역 점검·순찰 강화, 환경 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128)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39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특별 감시·단속은 첫 번째 단계(9월 21일~27일)로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 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5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390여 곳의 현장도 확인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두 번째 단계(9월 28일~10월 3일)는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 단계(10월 4일~10월 6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서.  
2.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책임자	과 장	한준욱 (044-201-6160)
		담당자	주무관	박병률 (044-201-6175)



00도(00군)에서는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3.9.21.~10.6.)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 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1. 환경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내역>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폐기물처리업자)

**2. 환경오염신고(☎128)를 받을 경우 처리절차는?**

- 주간에는 해당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야간에는 해당기관 당직실로 연결되어 신속·처리됨